



비관세장벽 현안 :

호주, 수입식품 생산자 의무신고제 시행

2016년 6월 1일부터 호주 수입식품 생산자 의무신고제가 시행되었다. 동 제도는 2016년 3월 최초 고시되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다. 식품 항목별로 도입 시기가 상이하며, 생산자 의무신고 적용을 받지 않는 품목도 있어 수출자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호주, 수입식품 생산자 의무신고제 시행

2016년 6월 1주차

지난 2015년 2월, 호주에서는 중국산 냉동 딸기로 인해 9명이 A형 간염 감염 사례가 잇따랐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수입식품 생산자 의무신고제는 생산자와 생산기업을 사전에 등록하고 감시함으로써 더욱 까다롭게 관리할 수 있다.

호주 당국은 ‘생산자(producer)’를 식품을 최종적으로 가공 또는 포장하는 자를 지칭하고, 여기에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모두 포함된다. 올해 6월부터 수입 빈도가 비교적 낮은 동물성 생산품(HS Code 05 기준)부터 차례로 시행되며, 2016년 12월까지 도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호주 농림수자원부는 새로운 제도가 수입식품 검사부서의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신(新)제도 도입이 식품안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참고자료]

호주 농림수자원부 공지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goods/food/mandatory-producer-details>

생산자 의무신고제로 인한 호주 수출 전망은?

지난 해 2월, 중국산 냉동 딸기로 인한 A형 간염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호주 소비자들의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 농림수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신선 야채 및 과일로, 가공처리를 하지 않아 바이러스, 미생물 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항목들이다. 호주 식품안전청은 수입식품의 생산자 의무신고제를 필두로 향후 식품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은 최근 딸기, 포도 등 농산물 검역 타결에 따라 수출의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호주의 까다로운 수입 규정에 잘 대비하여야 한다. 수입식품 생산자 의무신고제를 비롯한 라벨링 규정, 미생물 및 병해충 규정에 유의하여 호주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다.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생산자 의무신고제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자를 호주 당국에 등록하여 위생기준에 적합한 생산자만을 허가하고,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리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호주 농림수자원부에 등록하는 것 외에도, 라벨링 규정에 따라 생산자와 생산지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 내 식품 생산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입식품 생산자 의무신고제와 관련, 자세한 품목과 시행 일자에 대한 정보는 호주 농림수자원부의 하기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goods/food/mandatory-producer-details>

- KATI(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상의 콘텐츠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A형 간염 원인이 된 중국산 냉동 딸기]

